

기재 요령

- 잘못 기재했을 경우 이중선으로 정정 표시를 하고 여백 부분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 제출하신 확인서의 개인정보는 급부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사용 용도 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확인서 빨간 선 안에 볼펜 등 검정펜 으로 기재하십시오. 지워지는 볼펜으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住民税非課税世帯に対する 臨時特別給付金確認書

(宛先) 名古屋市長

裏面の記載事項に誓約・同意の上、確認書を提出します。

赤枠内をボールペンな

1 5/31(火) 提出期限

記入日 令和4年 1 月 1 日

1 支給対象世帯

※内容を確認してください。

No.	対象世帯員	生年月日
1	名古屋 太郎	昭和40年 3月 7日
2	名古屋 花子	昭和41年10月15日
3	*****	*****
4	*****	*****
5	*****	*****
6	*****	*****
7	*****	*****

2 受給者(世帯主の氏名をおろかじめ印字しています)

※必ず赤枠内に署名の上、電話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受給者の氏名	署名	連絡先電話番号★忘れずに記入してください。 日中連絡のとれる番号(携帯電話番号も可)
名古屋 太郎	名古屋 太郎	052 (111) 1111
住所 (確認書の送付先)	460-8508 中区三の丸三丁目1番1号	

3 振込先口座情報

「2 受給者」に署名された方の振込先口座を記入してください。

なお、「1 支給対象世帯」の「対象世帯員氏名」以外の方の口座に振込を希望される場合は、コールセンター(☎050-3135-3260)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口座名義人名(カタカナで記入) (漢字なども1マスで記入し、姓と名の間は1マス空けてください。)	金融機関名	支店名
ナゴヤ タロウ	はちまる	なごや
分類 ①普通 ②当座	口座番号 (右詰)	
	1 1 1 1 1 1 1 1	

通帳のコピーを左側の添付用紙に添付してください。

事務局使用欄(記入不要)

--	--	--	--

● 제출 시의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확인서 뒷면의 서약・동의 사항에 대하여 승낙하신 날짜입니다.

● 지급 대상 세대원의 성명을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수급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을 확인서 왼쪽 첨부용지에 첨부해 주십시오.

본인 확인 서류

건강보험증,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운전면허증, 여권, 체류 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 등의 사본
※상세사항은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 인쇄되어 있는 수급자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지급을 받지 않으실 경우 서명란에 “辞退” (수급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써넣고 반송해 주십시오.

● 확인서에 기재하신 내용에 미비점 등이 있을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전화 드릴 수 있으므로 낮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주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인쇄되어 있는 주소로 “급부금 입금 완료 안내”를 송부 드립니다.

● 입금 계좌는 “2” 란에 인쇄되어 있는 분의 계좌를 기재하십시오.

계좌 명의인 성명 란은 네모 안에 카타카나로 기재하십시오.

또한, 계좌 명의인 성명・금융기관명・지점명・분류・계좌번호 확인이 가능한 통장 등의 사본을 신청서 왼쪽 첨부용지에 첨부해 주십시오.

● 유초은행의 계좌를 지정하실 경우에는 기호・번호가 아니라 입금처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 “1 지급 대상 세대”의 “대상 세대원 성명” 이외 분의 계좌로 입금을 원하시는 경우 콜센터(☎050-3135-3260)로 문의해 주십시오.

● “분류”는 “1보통”, “2답좌”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십시오.

확인서 왼쪽 첨부용지에 대하여

확인서 왼쪽은 ①수급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과 ②입금처 계좌 정보 관련 통장 등의 사본을 첨부하는 용지입니다. "첨부용지"를 절취선을 따라 자른 후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과 통장 등의 사본을 스테플러 등으로 첨부하고 "확인서"와 "첨부용지"를 반신용 봉투에 동봉하여 반송해 주십시오.



① 수급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에 대하여

지금 대상 세대가 신청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므로 수급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을 신청서 왼쪽 첨부용지에 첨부해 주십시오. (원본은 송부하지 마십시오.)

※수급자의 본인 확인 서류는 아래 서류 중 어느 서류 사본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아래 서류가 없는 경우 콜센터(☎050-3135-3260)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서류

- 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후기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건강보험 피보험자증 등)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 운전면허증 또는 ● 운전경력 증명서 ● 여권 ● 체류 카드 ● 특별임주자 증명서 ● 외국인등록 증명서
- 마이넘버 카드 (얼굴사진이 있는 앞면만 복사에 주십시오.)

※ 뒷면은 개인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절대 복사하지 마십시오.

※ "마이넘버 통지 카드"는 본인 확인 서류가 아니므로 절대 송부하지 마십시오.

그 밖의 서류

- 전쟁 상병자 수첩 ● 신세장애자 수첩 ● 애호 수첩 (육육 수첩) ● 경로 수첩 (경로 우대권)
- 장애자 수첩 (정신장애자 보건복지 수첩) ● 국민연금 수첩 등

※본인 성명이 인쇄되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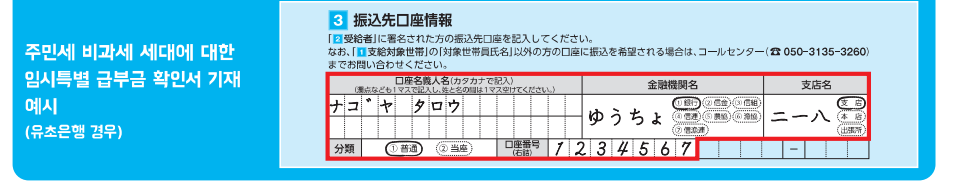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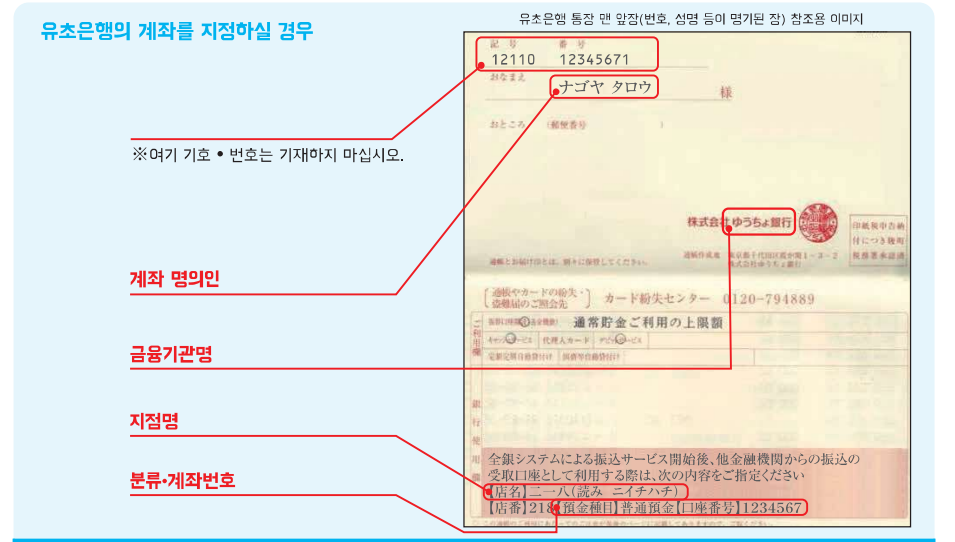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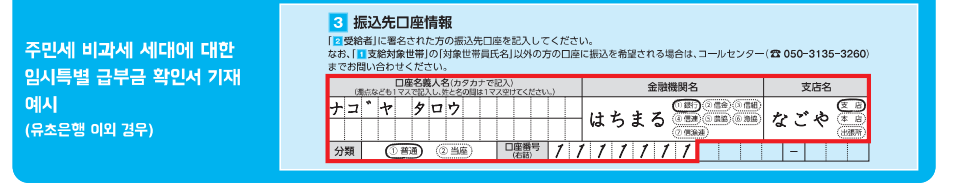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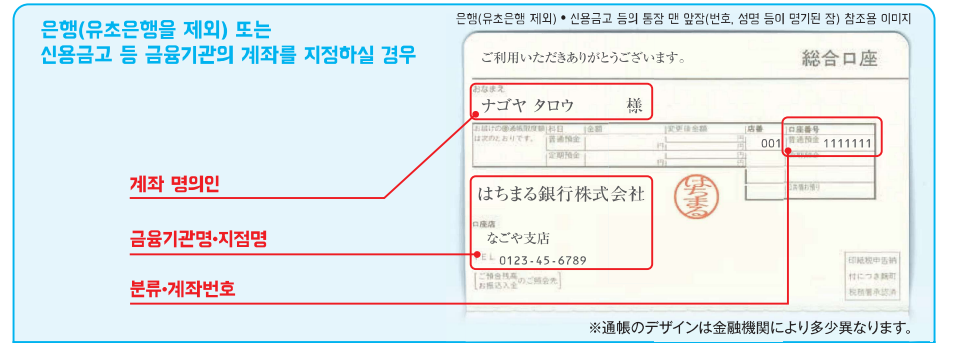
※외국인 본으로 체류기간 갱신 수속을 하지 않은 분은 갱신 수속을 한 후 제출해 주십시오. 나고야시가 체류기간 갱신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후일에 체류 카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입금처 계좌 정보 관련 통장 등의 사본에 대하여

입금 오류 방지를 위해 입금처 대상자의 통장 사본(계좌 명의인 성명, 금융기관명, 지점명, 분류, 계좌번호가 기재된 페이지 사본)을 첨부용지에 첨부해 주십시오.

또한 통장을 소지하지 않으신 분은 금융기관명 • 계좌 명의인 성명 • 지점번호(3자리 수) • 계좌번호(5~7자리 수) 확인이 가능한 연금카드 등의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덧붙여, 통장 등의 사본은 입금처 명의인의 사본만 필요합니다. 입금처 명의인이 아닌 분의 사본은 필요 없습니다.



확인서(엽서) 뒷면에 기재

<서약·동의 사항>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 확인서를 제출할 때 아래 사항에 대한 서약·동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이하 “급부금”이라 한다.)의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 (2) 세대원 중에 주민세 과세 대상 소득이 있음에도 미신고한 자는 없습니다.
- (3) 급부금 지급 요건의 해당성 등을 심사하는 등의 목적으로, 나고야시가 필요한 주민기본대장 정보, 세금 정보 등 공부(公簿) 등의 확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을 다른 행정기관 등에 요구·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4) 공부(公簿)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5) 이 확인서는 나고야시가 지급을 결정한 이후에는 급부금 청구서로서 취급하여도 무방합니다.
- (6) 나고야시가 지급을 결정한 후 확인서에 미비점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계좌 입금 등이 완료되지 않았고 또한 나고야시가 수급자에게 2022년 9월 30일까지 연락·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수급자가 본 확인서 제출을 취하한 것으로 나고야시가 간주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 (7) 급부금 지급 후, 본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급부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급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 (8) 동일 세대가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을 수급하지 않았습니다. 급부금을 수급하였던 경우 급부금을 반환하겠습니다.